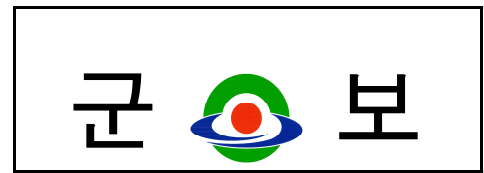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14호 2020. 1. 13.(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단지 모집공고(예천군 공고 제2020-43호)
-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67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단지 모집공고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년 1월 13일

예 천 군 수

1. 모집대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단지 단, 5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

2. 모집기간 : 2020. 01. 13. ~ 2019. 04. 17. 18:00까지

3. 지원금액 : 2020년 예산 범위 내에서 단지별 총 사업비의 일부 지원

※ 예산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4. 지원대상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
- 상·하수도시설의 유지·보수(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및 재난 안전표지판 유지·보수
-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5. 지원결정

-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공동주택의 노후 년수 및 입주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음

6. 접 수 처 : 예천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054.650.6352)

7. 제출서류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단

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

다.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

라.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마. 공법 및 공정표

바. 설명이 첨부된 현황사진

8. 안내사항

가.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 도비보조사업을 우선으로 하며 해당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을 시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나. 제출서류는 아래 첨부된 양식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천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50.63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	공동주택명		동 수	
청	주 소		세대수	
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사업명	소요예산			사 업 내 용	비 고
	계	보조금액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5. 설명이 첨부된 현황사진 제출(한글파일의 사진대지)

【전본】

사 업 계 획 서

1. 단지현황

- 아파트명 : ○○아파트
- 위 치 : 예천군 읍.면 (도로명주소기입)
- 단지현황 : 동 세대
- 준공일자 : 19 . . .

2. 사 업 명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아파트 ○○시설 보수공사)

3. 사업목적

- ○○○○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서 ○○시설이 노후 및 파손되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금회 ○○시설을 보수 및 교체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4. 소요예산

(단위 : 원)

구 분	합 계	보조금(00%)	자부담(00%)	비 고
공 증				부과세 포함

5. 사업기간 : 20 . ~ 20 . (00일간)

붙임 : 내역서, 시공도면, 예금통장사본, 현황사진 등

【견본】

000아파트 입주자 동의서

경상북도(예천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0. . .

1. 대표자 선정에 대한 동의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19 . 00. 00.
-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000아파트 동 호
- 연 락 처 : 010-

2. 관리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동의

- 000아파트 00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의 00%를 지원 받고 우리 아파트에서 00%를 부담하여 보수함

세대수	1. 대표자 선정 동의결과			2. 관리비용 지원신청 동의결과		
	찬성	반대	동의율	찬성	반대	동의율
세대						

동(세대)							
호수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1. 대표자 선정		2. 관리비용 지원신청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견본】

예정공사비 견적서

※ 주의: 2개 업체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가격을 첨부하여야 함(부가세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전본】

보수대상 현황사진

○○아파트 전경사진

○○시설 노후 사진

【견본】

예정공정표

공 사 명	
공 법	
공 사 비	

공 종	전체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토공									
기초공사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1월 13일

예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예천군 삼강문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위치 (안 제1조 ~ 제4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삼강문화단지의 위치 등
나. 강문화전시관의 운영 (안 제5조 ~ 제11조)

○ 개관 및 휴관

- 휴관일 : 1월1일, 설날 및 추석당일, 12월31일,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

○ 관람료 등 각종 운영에 관한 규정

- 관람료 : 소인 및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

- 관람료의 감면

· 전액감면 : 만2세 이하의 영유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100분의 50 감면 : 예천군민

· 100분의 20 감면 : 10인 이상의 단체관람자

다. 캠핑장의 운영 (안 제12조 ~ 제20조)

○ 이용료 등 각종 시설이용에 관한 규정

- 이용료(성수기 기준)

· 오토캠핑장 : 40,000원

· 모 빌 홈 : 일반 형 130,000원, 필로티 형 150,000원

- 이용료의 감면

· 100분의 30 감면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 100분의 20 감면 : 예천군민

· 100분의 10 감면 : 경북도민

라. 시설의 위탁 (안 제21조 ~ 제28조)

○ 시설의 관리위탁 및 대상

- 삼강문화단지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 위탁의 내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4. 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 제출처

○ 우)3682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802, Fax 054-650-6809, E-mail qhfmrls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삼강문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 삼강문화단지”란 강문화전시관, 삼강주막 체험촌, 보부상문화 체험촌, 캠핑장, 종합안내센터, 생태공원, 상가 및 숙박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예천군수로부터 삼강문화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예천군 삼강문화단지(이하“삼강문화단지”라 한다)는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109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삼강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강문화전시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강문화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12월 31일, 근로자의 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하고 그 다음 개관일을 휴관일로 한다.
3. 전시관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미리 예천군 (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휴관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의 징수) 전시관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에게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한다.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면제

가. 만2세 이하의 영유아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

가유공자

라.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

마.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주민

바.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10인 이상의 단체관람인 경우 100분의 2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의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시간 및 매표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아래와 같다.

4월 ~ 10월	11월 ~ 3월
10:00 ~ 17:30	10:00 ~ 17:00

②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시작 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 및 시설 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관의 관람 및 시설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로 인하여 전시물과 그 밖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한 물품 또는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 그 밖에 군수가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행위가 허가된 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흡연, 음주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관람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1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관람자의 편리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전시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 판매점
3. 예천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3장 캠핑장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모빌홈, 오토캠핑장, 관리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13조(이용신청 및 이용료 납부) ① 캠핑장의 이용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캠핑장 예약정보시스템(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전에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일 전날까지 예약되지 아니하거나 예약이 취소된 경우 이용일 당일에 직접 이용신청 할 수 있다.

②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 이용일이 속한 달(月)의 전 달 1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 시작 시간 등 예약 방법은 군수가 정하여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

③ 예약한 날 다음날 18:00까지 이용료 전액을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결제 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되며, 캠핑장 이용일 전날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된다. 다만, 각급 학교 및 단체·기관 등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 내 이용료 미 입금 시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시설이용료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 별표 3의 시설 이용권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약시스템을 통해 이용신청을 한 이용자는 이용일 당일에 시설 이용권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 별표 3의 시설 이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바.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

사.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주민

2.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 100분의 20 감면

3. 경북도민인 경우 100분의 1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액이 큰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16조(이용료의 게시) 군수는 이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4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8조(시설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이용 제한 기간 및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되는 등 공중에 위해(危害)가 될 수 있는 경우
4. 별표 5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시설 이용권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시설 이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별표 5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용기간 중 군수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시설의 위탁

제21조(시설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삼강문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삼강문화단지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자격 및 기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2조(위탁의 내용) ① 위탁내용, 위탁조건 등의 사항은 서면으로써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인 시설(이하 이 장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의 유지·관리
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
3. 시설 주변 환경 보호, 관리 및 각종 편의 제공
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에 군수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조사의 협조 및 보고, 서류 제출 등

제24조(수탁자의 금지 행위)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시설의 임대 또는 일체의 사용권 허용 행위
3. 시설의 원상(原象)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제2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4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 및 재산손실 등을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손해배상) 삼강문화단지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람은 이를 원상회복시키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
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강문화전시관 관람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관 략 료 (개인)	비 고
소 인 / 청소년	2,000	만3세이상 ~ 만19세이하
대 인	3,000	만20세 이상

• 관람료 감면

(단위 : %)

감 면 대 상	감 면 율	비 고
만2세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삼강리 주민 등	100	
예천군민	50	
단체(10인 이상)	20	

[별표 2]

캠핑장 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이용시간	성 수 기	비 수 기		비 고
				주말 공휴일	평 일	
오토 캠핑		1면/1일	40,000	30,000	20,000	
모 빌 홈	일 반 형	1면/1일	130,000	100,000	80,000	
	펠로티 형	1면/1일	150,000	120,000	100,000	
<비 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시작일 기준) 가. 평 일 : 일요일~목요일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 2. 이 용 일 : 1일(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당일(09:00~18:00) 3. 퇴실시간 초과시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 추가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산정) 가. 오토캠핑 : 시간당 2,000원 추가, 3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나. 모 빌 홈 : 시간당 10,000원 추가, 3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이용료 감면

(단위 : %)

감 면 대 상	감 면 율	비 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관내 초·중·고 수련활동참여자, 다자녀가정, 삼강리 주민	30	
예천군민	20	
경북도민	10	

※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율이 큰 것을 적용

[별표 3]

캠핑장 시설 이용권(제14조 관련)

No.20 - 000001	No.20 - 000001
캠핑장 시설 이용권(원부)	캠핑장 시설 이용권(이용자보관용)
- 이 용 료 : ₩ (금 원) - 이용시설 : - 이용기간 : ~ - 이 용 자	- 이 용 료 : ₩ (금 원) - 이용시설 : - 이용기간 : ~ - 이 용 자
☐ 주 소 :	☐ 주 소 :
☐ 성 명 : 외 명	☐ 성 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였음	위와 같이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예 천 군 수 (인)

[별표 4]

캠핑장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비 고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선납금액 반환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 반환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50 반환	
	이용예정일 1일전 취소 (24시간 이전)	선납금액 100분의 20 반환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적용

※ 예약자가 이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본다.

캠핑장 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제18조 관련)

이 곳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이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캠핑장 이용자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실조치 됩니다.
2.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입니다.
3. 시설 이용료는 정수 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4. 장 소
 - 배정된 오토캠핑장 및 모빌 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취사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시설 외에는 이용을 금합니다.
5. 차량이용
 - 자동차의 출입은 23:00부터 07:00까지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6. 소 음
 -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노래방 기기 사용은 일절 불가합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7. 위 생
 - 폐수 및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8. 애완동물
 - 모든 애완동물은 목줄 착용 및 배변봉투를 지참해 오셔야 합니다.
9. 화재와 사고
 - 캠핑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핑장 내 불꽃놀이, 캠프파이어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전기시설
 -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구(1000w 이상) 사용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인하여 캠핑장 전체의 전기가 다운 될 염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사용에 제한을 두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1.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파손 등에 대하여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2.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